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경호처 폐지 또는 개선〉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68호)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04호)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11호)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13호)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20호)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41호)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47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94호)
- 황 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89호)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43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54호)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33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75호)

2025. 2.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
III. 검토의견	22
1. 개정안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22
2.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 (민형배, 신장식, 황명선, 이광희, 조인철의원안)	23
3. 경호대상 제외규정 마련(송재봉, 용혜인, 정춘생의원안) ...	33
4. 경호업무 한계규정 보완 및 벌칙규정 강화 (한민수, 송재봉, 윤준병, 황희의원안)	36
5. 경호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 추가(윤준병, 백혜련의원안) ...	44
6. 탄핵소추 대상에 대통령경호처장 추가(윤준병(2)의원안) ..	47
※ 참고자료	50

I . 제안경위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민형배 · 정동영 · 이개호 · 양문석 · 문정복 · 임미애
박지혜 · 김문수 · 조계원 · 박지원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5. 1. 6.

다. 회 부 일 : 2025. 1. 7.

※ 의안번호 : 7268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신장식 · 김선민 · 차규근 · 황운하 · 정춘생 · 백선희
김준형 · 이해민 · 서왕진 · 강경숙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5. 1. 7.

다. 회 부 일 : 2025. 1. 8.

※ 의안번호 : 7304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황명선 · 윤준병 · 김우영 · 복기왕 · 정동영 · 김영환
용혜인 · 김문수 · 정진욱 · 채현일 · 박용갑 · 민병덕
송재봉 · 박희승 · 이용선 · 염태영 · 박지원 · 박선원
정태호 · 이상식 · 허영 · 위성곤 · 황정아 · 신영대
박해철 · 이병진 · 백승아 · 위성락 · 전용기 · 이재강
문금주 · 김윤 · 오세희 의원(33인)

나. 제 안 일 : 2025. 1. 7.

다. 회 부 일 : 2025. 1. 8.

※ 의안번호 : 7311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한민수 · 박상혁 · 임오경 · 이건태 · 김영호 · 박용갑
한준호 · 서영교 · 백혜련 · 정일영 · 박해철 의원(11인)

나. 제 안 일 : 2025. 1. 7.

다. 회 부 일 : 2025. 1. 8.

※ 의안번호 : 7313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송재봉 · 이재관 · 강득구 · 이병진 · 이재강 · 임호선
서영교 · 김우영 · 조인철 · 황명선 · 허성무 의원(11인)

나. 제 안 일 : 2025. 1. 8.

다. 회 부 일 : 2025. 1. 9.

※ 의안번호 : 7320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용혜인 · 한창민 · 김문수 · 채현일 · 김 윤 · 정성호
소병훈 · 박지원 · 황명선 · 복기왕 · 김남희 의원(11인)

나. 제 안 일 : 2025. 1. 8.

다. 회 부 일 : 2025. 1. 9.

※ 의안번호 : 7341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이광희 · 김문수 · 채현일 · 박지원 · 이상식 · 양문석
이재강 · 민병덕 · 정일영 · 김 윤 · 송재봉 · 김우영
복기왕 · 윤종균 · 박해철 · 이병진 · 박상혁 · 박정현
임호선 의원(19인)

나. 제 안 일 : 2025. 1. 8.

다. 회 부 일 : 2025. 1. 9.

※ 의안번호 : 7347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윤준병 · 박민규 · 조계원 · 정동영 · 황명선 · 박용갑
강준현 · 안호영 · 민병덕 · 신영대 · 김태선 · 서영교 의원(12인)

나. 제 안 일 : 2025. 1. 9.

다. 회 부 일 : 2025. 1. 10.

※ 의안번호 : 7394

[황회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황 회 · 김태년 · 허 영 · 이용선 · 김문수 · 박용갑
차지호 · 신영대 · 정성호 · 한민수 · 김준형 · 안규백 의원(12인)

나. 제 안 일 : 2025. 1. 14.

다. 회 부 일 : 2025. 1. 15.

※ 의안번호 : 7489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백혜련 · 김영환 · 손명수 · 이정문 · 한민수 · 한정애
김기표 · 박희승 · 송기현 · 이학영 · 박지원 · 이성윤
허 영 · 이병진 의원(14인)

나. 제 안 일 : 2025. 1. 15.

다. 회 부 일 : 2025. 1. 16.

※ 의안번호 : 7543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윤준병 · 박민규 · 조계원 · 정동영 · 황명선 · 강준현
안호영 · 김문수 · 민병덕 · 신영대 · 김태선 · 문정복 의원(12인)

나. 제 안 일 : 2025. 1. 15.

다. 회 부 일 : 2025. 1. 16.

※ 의안번호 : 7554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정춘생 · 서왕진 · 황운하 · 김준형 · 백선희 · 박은정
김재원 · 김선민 · 차규근 · 신장식 · 이해민 · 강경숙 의원(12인)

나. 제 안 일 : 2025. 1. 20.

다. 회 부 일 : 2025. 1. 21.

※ 의안번호 : 7633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조인철 · 장종태 · 박수현 · 주철현 · 이건태 · 이해민

한정애 · 박용갑 · 이개호 · 정진욱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3.

다. 회 부 일 : 2025. 2. 4.

※ 의안번호 : 787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

1. 제안이유

박정희 군사정권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권력남용 및 측근정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속기관화 된 경호조직은 후진국 또는 독재정부에서 나타나는 조직형태라고 지적합니다.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국가정상 경호조직을 직속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 황궁경찰본부(왕실)와 경시청 경호과(총리)에서 경호를 맡습니다.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가. 종전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함에 따라,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직접 규정하던 것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종전의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된 사람 등의 경호 인력과 경호처 조직 등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 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하며,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처장 및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 마.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안]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특정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이 750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있음. 대통령 경호조직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 경무대경찰서 담당으로 출발하여 제2공화국 까지 경찰이 경호업무를 맡았음.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되었고, 1963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속기관으로 대통령 경호실을 창설한 바 있음. 군사정권 시절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친위대로 기능하였음.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으로 불리던 대통령 경호처가 최근 법이 정한 경호 업무의 범위를 넘어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보위기구와 유사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기구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형편임. 한편, 해외 주요국가들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대부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대통령 외에 주요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는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일원화 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안]

1.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 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장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함.

특히, 최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나아가 수사기관 등에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함.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전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함에 따라,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직접 규정하던 것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종전의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된 사람 등의 경호 인력과 경호처 조직 등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 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하며,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처장 및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 마.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삭제).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안]

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으로 규정돼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 발생한 사건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또,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이는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대통령 등의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호”란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안 제2조).

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21조제1항).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

법원이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하였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하였음.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내란을 일으키고,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범죄 피의자로 적법한 경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특히,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

이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 공권력의 붕괴와 무정부 상태 조장을 방지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조).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에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리를 침해하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게 됨.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책임자가 압수 또는 수색의 승낙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중대 이익 침해’라는 추상적인 요건으로는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됨.

내란죄와 외환죄를 이유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경호 행위의 불법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이 법 제4조제1항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한 이유로 법관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사람을 그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안]

현행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상 직속기관으로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을 두고 소관 업무를 보좌하고 있음에도 경호만을 위하여 경호처를 두고 있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최근 헌정문란 행위 관련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통령경호처가 고유의 경호업무를 넘어 친위 사조직 역할을 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처럼 위법을 자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대통령과 총리 등 국가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는 경호구역 지정 요건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 판단 등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호의 정의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危害)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명시하며, 대통령경호처장 및 소속공무원의 직권 남용 금지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력 행사’ 및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황희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임무인 경호란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였음.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경호를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에서는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한계 말고는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이 어느 곳이나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발생한 사건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시

대통령경호처가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여 헌법기관 간 충돌의 우려가 있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각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이 지켜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수행의 객관성·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상 대통령 등의 경호와 관련하여 경호대상이 구금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현재 대통령이 내란혐의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법을 근거로 구치소에 서도 경호를 계속하고 있음. 내란범죄의 혐의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특권이자 ‘황제 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에 맞춘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다음날 1시경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제6197호)」 의결을 거쳐 약 6시간 만인 4시 27분경 해제되었음.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였고, 2024년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이를 저지함으로써 집행이 무산된 사건이 있었음.

이로 인해 각 개정안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거나, 위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호대상·경호업무·경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보완 사항을 입법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의 주요내용 정리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대통령경호처 폐지(5건)	-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	민형배, 신장식, 황명선, 이광희, 조인철 의원안
대통령경호처 개선(8건)	- 경호대상 제외규정 신설	송재봉, 용혜인, 정춘생 의원안
	- 경호업무 한계규정 보완 및 벌칙규정 강화	한민수, 송재봉, 윤준병, 황희 의원안
	- 경호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 추가	윤준병, 백혜련 의원안
	- 탄핵소추 대상에 경호처장 추가	윤준병(2)의원안

이하에서는 13건의 개정안을 쟁점별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함.

2.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

(민형배, 신장식, 황명선, 이광희, 조인철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경호처를 폐지하고, 현재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속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거나 정비하려는 것임.¹⁾

다만, 개정안은 경찰청 내 신설조직의 명칭과 해당 부서장의 직급,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기간 연장의 판단 주체와, 경호구역 지정권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및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소속과 구성 등 구체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음.²⁾

[표-2]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현 행	민형배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신장식 의원안	이광희 의원안
대통령 경호기능	대통령	경찰로 이관				
조직명	경호처	대통령경호국			경호국	국가경호국
부서장 직급	차관급	치안정감	치안감	치안정감	-	-
전직대통령 경호연장 판단	경호처장	경찰청장		-	-	-
경호구역 지정권자	경호처장	경찰청장				경호국장
대통령경호 안전대책 위원회	소속	경호처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경호처장	경찰청장		-	-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안전 대책기구	소속	대통령	대통령		국무총리	
	장	경호처장	경찰청장		-	-

1) 5건의 개정안 공통적으로 직원(제6조), 임용권자(제7조), 정년(제11조), 제12조(징계), 제17조(사법경찰권),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0조(손실보상) 등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있음.

2) 각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p.50 [참고1 : 개정안 조문대비표] 참조

나. 대통령 경호기관 연혁 및 현황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는 경호처가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경호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 기구에 해당함.³⁾

대통령 경호 조직은 1949년 경무대경찰서의 국가원수 경호 및 경무대 경비 담당으로 출발하여 1961년 11월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되었고, 1963년 12월 제3공화국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대통령경호실법」 제정)되었음.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호처로 변경된 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실로 환원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3] 대통령경호처 주요 연혁

구 분	주요 연혁
대통령경호실 (1963. 12. 17.)	- 1949년 2월 ‘경무대경찰서’ 창설 -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경호대’ 창설 - 1961년 11월 중앙정보부 경호대 발족 -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 창설(차관급 이후 장관급)
대통령실 경호처 (2008. 2. 29.)	-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실 경호처’로 변경(차관급)
대통령경호실 (2013. 3. 23.)	-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경호실’로 변경(장관급)
대통령경호처 (2017. 7. 26.)	-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경호처’로 변경(차관급)

3)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 제2장(대통령)에 위치하고 있음.

경호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경호처장”), 차장, 1실, 3본부, 보좌기관인 감사관,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1] 대통령경호처 조직도



자료: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경호처는 정무직(차관급)인 경호처장 1명을 포함한 총 75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보안사항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표-4] 대통령경호처 인원 현황

구 분	총 계	정무직	특(별)정직	일반직
정 원	750명	1명	495명	254명

자료: 대통령경호처

한편, 지난 2016년 제20대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당시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4506호)이 발의되었으나, 특별한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다. 주요 검토사항

개정안은 경호처가 군사정권 시절부터 유지된 권위주의적 산물이라는 의견⁴⁾과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대통령 경호업무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가 담당함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먼저,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인력 운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력 집중을 방지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호 체계라는 의견이 있음.

구체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를 경찰로 일원화할 경우 기존 경호처가 독립 기관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설·장비 등 자원을 통합·활용함으로써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및 국가예산 절감 기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⁵⁾ 경호임무에 필수적인 수사권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⁶⁾이 있음.

4) 한겨레, “독재의 잔재, 통제불능 경호처”, 2025. 1. 5.

5) 이춘삼, 「경찰경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2010), p.52

6) 이수오, 「경찰의 경호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p.95

또한, 경호업무를 국가안보와 결부시켜 경찰업무보다 상위의 업무로 취급할 경우 경호책임자의 직급을 지나치게 높이고, 이로 인한 권력자와의 밀접성이 강화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함으로써 경호기관의 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경호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충실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⁷⁾

나아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중 미국⁸⁾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이 연방경찰, 국가경찰 등 일반 경찰조직이 경호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⁹⁾과, 대통령 경호임무만을 위해 장·차관급을 수장으로 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을 두는 외국 사례는 없다는 의견¹⁰⁾이 있음.

[표-5] 해외 주요 국가별 경호조직 운영형태

구 분	국 가	경호기관명	소 속
대통령중심제	미국	비밀경호국(SS)	국토안보부
	러시아	연방경호국(FSO)	대통령 직속
이원집정부제	프랑스	경호실(SLDP)	국립경찰청
	포르투갈	요인경호대	경찰청
	우크라이나	국가경호국	대통령 직속
	튀르키예	대통령경호국	대통령실
의원내각제	영국	왕실요인경호단	런던광역경찰청
	독일	경호총국	연방범죄수사청
	일본	경비국	경찰청(중앙)
		경비부	경시청(자치)
	이탈리아	대통령근위대	대통령 직속
		총리경호실	국가경찰
	이스라엘	경호안전국(ISA)	총리 직속

자료: 대통령경호처

7) 신회섭·한승훈, 「대통령 경호책임자의 월권사례 분석을 통한 경호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2021), pp.383-385

8)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경찰과 분리된 조직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수장 또한 차관보급으로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됨.

(미국·영국·독일·일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p.107 [참고2: 해외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 관련 제도] 참조)

9) 이춘삼, 「경찰경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2010), p.49

10) 장기봉, 「21세기 국가경호기관 MODEL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p.108

반면, 대통령 경호기능을 현재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에서 전담하는 것이 경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¹¹⁾ 대통령에 대한 기밀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¹²⁾

구체적으로, 경찰이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할 경우 군이 경찰의 지휘·통제를 거부하거나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¹³⁾과 경호업무와 관련한 조정 통제가 곤란하다는 의견¹⁴⁾이 있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경호·경비 작전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있음.¹⁵⁾

또한, 현재 경호처는 조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행정, 전산, 방호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경호라는 특정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경호업무에 요구되는 정보·보안·검측·통신·교육훈련 등 다양한 경호관련 제반 기능의 통합 수행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¹⁶⁾¹⁷⁾

11) 경호처는 경호는 근접경호, 폭발물 탐지/제거, 대저격 활동, 전기·소방·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조치, 무인 드론 탐지/대응, 사이버보안, 화학·생물학·방사능 탐지/제거, 국정지휘통신망 보장, 비상응급 조치, 기동수단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전문기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12)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고도의 훈련과 더불어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면담자·발언 등 경호임무를 수행하면서 지극한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 경호기능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경호처에 비해 방대한 조직 규모와 이로 인한 정보 접근 인원 증가 및 폭넓은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 유출 가능성 등으로 현재보다 기밀 유지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한공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2018. 2.).

13) 이수오, 「경찰의 경호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p.95

14) 양재열, 「국가원수 경호 시스템의 변화와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p.95

15) “이는 다수 경호유관기관의 경호안전 관련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 및 총괄, 나아가 갈등예방 차원에서 대통령 경호기관인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직속의 경호전문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을 시사한다”(주일엽, 「대통령 경호기관의 변천과정 및 발전방안」, 시큐리티연구(2021), p.179)

16) 양재열, 「국가원수 경호 시스템의 변화와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p.95

17) 반면,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여러 업무(치안, 수사, 교통, 사이버 등)를 담당하고 있는데, 경호직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경호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대체로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상원·임준태, 「경찰경호시스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公安행정학회보(2005), pp.44-45)

나아가,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이므로, 현재 경찰이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과는 안보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¹⁸⁾

라. 기타 검토사항

부칙과 관련하여 5건의 개정안은 모두 경호처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경호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는 직급 체계, 연령 및 계급 정년 등에 있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경호·경찰공무원의 체계 통합을 위한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경호처를 폐지할 경우 경호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으로의 존치 여부, 구체적 직급 재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입법례¹⁹⁾를 참고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전환된 이후의 직급 산정기준은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체계·자구 측면에서 「경비업법」 제5조²⁰⁾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18) 조성구, 「대통령경호업무 경찰 이관에 대한 비판적 소고」, 시큐리티 연구(2019), p.192

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 2008. 2. 29. 제정)」 부칙

제5조(특별채용 등) ⑦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송위원회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한다.

20) 「경비업법」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를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4건의 개정안(조인철의원안 제외)이 벌칙규정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삭제하고 있으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통령경호처' 및 '대통령경호처장'을 인용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대한 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표-7] '대통령경호처' 및 '대통령경호처장' 인용 법률 현황

구 분	주요 연혁
대통령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아목 및 제16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4호
	「국회법」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대통령경호처장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5조제3항제1호

참고로, 각 개정안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기능을 담당할 신설조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이 전제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법률안 총 4건이 계류 중이므로,²¹⁾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대표발의의원 및 의안번호는 아래와 같음.

①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제7269호), ②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제7305호), ③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제7312호)
④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제7874호)

마. 관계기관의 의견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수사·치안·정보·보안·외사·경비·교통·사이버 등 광범위한 임무와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경우, 경찰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고, 대규모 조직과 잦은 인사순환으로 인해 경호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또한,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테러위협으로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²²⁾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경호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있으나, 군·경찰·국정원·소방·외교부·식약처 등 14개 경호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수행되는 영역이므로, 경호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호처를 유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경호 기능이 경찰청 하부조직으로 이관될 경우 보안·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자간 정상회의를 위한 경호·안전 대책 기구는 민형배의원안 및 조인철의원안과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하되 그 책임자를 경찰청장으로 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

22) 참고로,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경호업무는 전문성·독립성·연속성이 필요하므로, 유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기능은 현행과 같이 경호처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위원회의 경우 개정안과 달리 경찰청 소속으로 설치²³⁾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호업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특별한 의견을 개진하진 아니하였음.

다만, 안 제3조에 따른 대통령경호국(또는 국가경호국) 설치 규정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하부조직 등의 설치는 정부조직 법령에 근거하여 직제(사안의 경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정함이 원칙이고,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제34조 제6항²⁴⁾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국방부 및 경찰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23)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하여 민형배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조인철의원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신장식 의원안 및 이광희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음.

24)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경호대상 제외규정 마련(송재봉, 용혜인, 정춘생의원안)

개정안은 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송재봉의원안** 및 **용혜인의원안**은 경호대상자가 「형법」상 내란죄²⁵⁾(제87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외환죄²⁶⁾(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용혜인의원안은 해당 영장의 집행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

정춘생의원안은 경호대상자가 구금된 기간 동안 경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것임.

[표-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송재봉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제4조(경호대상)	제4조(경호대상)	제4조(경호대상)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서 신설>	① ----- ----- --. 다만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① ----- ----- --. 다만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① ----- ----- --.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호대상이 구금되는 경우 그 기간에는 경호

25) 「형법」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89조(미수범),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26)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제93조(여적), 제94조(모병이적), 제95조(시설제공이적),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제97조(물건제공이적), 제98조(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2조(준적국),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4조(동맹국)

현 행	송재봉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정춘생의원안
	<u>수색영장을 발부한</u> <u>대통령 등은 경호</u> <u>대상에서 제외</u> <u>한다.</u>	<u>수색영장을 발부한</u> <u>사람은 그 영장의</u> <u>집행과 관련하</u> <u>여서는 경호대상</u> <u>에서 제외한다.</u>	<u>대상에서 제외</u> <u>한다.</u>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구금상태에 있는 사람에도 적용(정춘생의원안)			

송재봉의원안 및 용혜인의원안의 경우 내란죄 또는 외환죄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구속 등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용혜인의원안은 영장의 집행관련으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경호처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이유로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이해됨.

이에 대하여는 개정안과 같이 「대한민국헌법」 제84조²⁷⁾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인정되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함께 경호는 유지하되 경호처가 사법절차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법률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7)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무죄추정의 원칙 측면에서 경호대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만으로는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체포 등 영장 발부를 이유로 경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특히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호 제공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²⁸⁾

한편, 정춘생의원안은 경호대상자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구금될 경우 해당 기간동안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교도소나 구치소는 이미 엄격한 보안과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경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예측하지 못한 특수한 경우에 경호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8) 참고로, 경호대상자 중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급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6조(그 밖의 예우)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4. 경호업무 한계규정 보완 및 벌칙규정 강화

(한민수, 송재봉, 윤준병, 황희의원안)

개정안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법률 위반 또는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호업무 한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재봉의원안은 ‘경호처장’을 대상으로,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한 지시·감독’을 금지함.

황희의원안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경호를 이유로 한 영장집행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한민수의원안은 ‘정의규정’에 경호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① 비밀누설, ② 직권남용 및 ③ 위법한 무기사용에 대한 벌칙 수준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윤준병의원안은 ‘정의규정’에 경호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직권남용 금지규정 적용대상에 ‘경호처장’을 추가하며, 금지되는 행위를 ① ‘이 법에 위배되거나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력 행사’, ② ‘「형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에 대한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구체화하는 한편,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 수준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 없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상향함.

[표-9]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송재봉의원안	한민수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황희의원안
제 2 조 (정 의) 이 법에서 사 용 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제2조(정의) - ----- ----- ----- -----.	
1. “경호”란 경호 대상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 여지는 위해 (危 害)를 방지하거나 제 거 하 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 을 말한다.		1. -----란 <u>헌법과 법률의</u> <u>범위 내에서</u> <u>경 호</u> ----- ----- ----- ----- ----- ----- ----- ----- ----- -----.	1. ----- ----- ----- ----- ----- ----- ----- ----- ----- ----- ----- <u>등 헌법과</u> <u>법 률 에 서</u> <u>정한 절차에</u> <u>따라 이루어</u> <u>지는</u>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 3 조 (대 통 령 경호처장 등) ① 대통령 경호처장(이하 “ 처 장 ” 이 라	제 3 조 (대 통 령 경호처장 등) ① ----- ----- -----			

현 행	송재봉의원안	한민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황희의원안
한다)은 대통 령이 임명하고, 경 호 처 의 업무를 총괄 하며 소속 공 무 원 을 지 휘 · 감 독 한다. <단서 신설> ②·③(생 략) 제 18 조 (직 권 남용 금지 등) ① <u>소속공무 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신 설>	----- ----- ----- ----- ----- ----- ----- ----. 다만, <u>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 · 감독 하 여 서 는 아니 된다.</u> ②·③(현행과 같음)		제 18 조 (직 권 남용 금지 등) ① <u>처장과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u> 1. 이 법의 규정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제 18 조 (직 권 남용 금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 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현 행	송재봉의원안	한민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황희의원안
② (생 략) 제 21 조 (벌 칙) ① 제 9 조 제 1 항, 제 18 조 또는 제 19 조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이 나		제 21 조 (벌 칙) ① ----- ----- ----- ----- 10년 ----- -----	절차를 거 치지 않은 위력 행사 2. 「형법」 제 87 조부터 제 90 조 까 지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같은 법 제 92 조 부터 제 103 조 까지의 외환에 관한 죄에 대 하 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 하는 절차를 거친 구속· 압수·수색· 체포 등을 방 해 하 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제 21 조 (벌 칙) ① 제 18 조 제 1 항을 -- ----- --- 사 람 은 7년 ----- -----	소속공무원은 경호를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 하 여 서 는 아니 된다.

현 행	송재봉의원안	한민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황희의원안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 한민수의원안 <신설> - 윤준병의원안		----- 1억원 ----- -----. ② (현행과 같음)	<u>금고에</u> ----- -----. ② <u>다음각호의</u> <u>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u> <u>사람은 5년</u> <u>이하의 징역</u> <u>이나 금고</u> <u>또는 1천만원</u> <u>이하의 벌금에</u> <u>처한다.</u> 1. <u>제9조제항을</u> <u>위반하여</u> <u>직무상 알게</u> <u>된 비밀을</u> <u>누설한 자</u> 2. <u>제18조제</u> <u>2항을 위반</u> <u>하여 이 법에</u> <u>규정된 임무</u> <u>외의 경찰</u> <u>공무원 직무를</u> <u>수행한 자</u> 3. <u>제19조제</u> <u>2항을 위반</u> <u>하여 위해를</u> <u>끼친 자</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각 개정안은 규정방식과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조금씩 상이하나, 모두 경호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경호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경호업무가 헌법과 법률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윤준병의원안 및 황희의원안은 직권남용 금지 규정(제18조)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금지행위에 「형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에 대한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윤준병의원안) 또는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경호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황희의원안)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 제21조제1항²⁹⁾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에 해당하며, 특히 위와 같은 행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특수공무방해죄(제144조)’로 규율되므로 개정안보다 중한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음.³⁰⁾³¹⁾

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1) ‘특수공무집행방해’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윤준병의원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황희의원안)으로 법정형이 더

또한, 윤준병의원안은 직권남용 금지 규정(제18조) 적용 대상에 현행 ‘소속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호처장’을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소속 공무원’은 경호처장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의미³²⁾한다는 점에서 중복 규정으로 보여짐.

둘째, 한민수의원안은 ① 비밀누설, ② 직권남용 및 ③ 위법한 무기 사용에 대한 법정형을, 윤준병의원안은 직권남용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있음.

[표-10] 법정형 상향 관련 개정안별 비교

구 분	현 행	한민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직권남용	5년이하 징역·금고	10년이하 징역·금고	7년이하 징역·금고
비밀누설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현행과 동일
위법한 무기사용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³³⁾이므로,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직권남용’, ‘비밀누설’ 및 ‘위법한 무기사용’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할지 여부는 입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임.

경하여 형사처벌 측면에서 개정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3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33)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다만,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 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5 결정)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이나 국정원 등의 경우 위법한 무기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³⁴⁾ 현재도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무기사용은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체계상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법정형이 「형법」상 직권남용죄³⁵⁾와 동일한 수준이고, 국가정보원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³⁶⁾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형을 지나치게 상향할 경우 경호처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4)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정보원법」, 「관세법」 등은 모두 소속 공무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위법한 무기사용에 대한 벌칙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35)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국가정보원법」 제22조(직권남용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경호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 추가(윤준병, 백혜련의원안)

헌행법상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위와 같은 경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윤준병의원안**은 경호처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백혜련의원안은 경호처장이 지정하려는 경호구역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추가함.

[표-1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윤준병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u>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경호업무의-----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u>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 ----- ----- ----- <u>이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제5조 제1항³⁷⁾), 경호구역이 지정될 경우 경호처는 해당 구역 내에서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됨.(제2조제1호·제2호³⁸⁾)

다만, 현행법상 경호구역 지정 시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한계(제5조제2항³⁹⁾)를 제외하고는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경호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호처장의 자의적인 경호구역 지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윤준병의원안) 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3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현행법상 경호구역 지정권자인 경호처장은 정무직 공무원⁴⁰⁾으로서 그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⁴¹⁾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⁴²⁾ 등에 따라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경호구역 지정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일종의 1차적 통제장치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백혜련의원안의 경우 경호처가 헌법기관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각 헌법기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헌법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⁴³⁾

40) 「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41)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2)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3) 다만,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은 비밀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제한되며, 만약 경호구역 설정시 각 헌법기관의 동의를 거친다면,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의 공식 및 비공식 행사장소, 일정 등이 유출되어 경호조치의 보안성과 신속성, 경호 책임의 일관성 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탄핵소추 대상에 대통령경호처장 추가(윤준병의원안)

개정안은 경호처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1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처장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u> <u>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u> <u>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u>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함⁴⁴⁾.

「대한민국헌법」은 탄핵의 대상자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여, 헌법 스스로 탄핵 대상자를 열거하여 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탄핵대상자를 확대할 권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⁴⁵⁾

44)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p.1309;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45)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검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처장·차장·수사처검사, 특별검사·특별검사보는 개별 법률에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표-13] 헌법 및 개별 법률상 탄핵소추 대상 직위 및 근거

구 분	대 상	근 거 ⁴⁶⁾
헌법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개별 법률 (직접적 근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제16조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개별 법률 (간접적 근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등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특별검사·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4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권력을 남용할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6

참고 1

개정안 조문대비표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 (민형배, 신장식, 황명선, 이광희, 조인철의원안)

현 행	민형배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u>경호의 직무범위</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경호구역”이란 <u>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u> 3. “소속공무원”이란 <u>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u> 4. “관계기관”이란 <u>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제1호에 따른 경호의 활동</u> ----- ----- -----. <u><삭 제></u> 4. ----- <u>제3조에 따른 대통령경호국이 경호업무</u> ----- ----- -----.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u>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② <u>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u> ③ <u>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u>	제3조(대통령경호국) ① <u>이 법에 따른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둔다.</u> ② <u>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u>

현행	민형배의원안
제4조(경호대상) ① <u>경호처의</u>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4조(경호대상) ① <u>대통령경호국의</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u>처장이</u>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6. ----- <u>경찰청장이</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u>처장이</u>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③ ----- ----- --- <u>경찰청장이</u> ----- -----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처장은</u>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경찰청장은</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u>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u>경호업무를 수행하는</u> ----- ----- ----- ----- ----- ----- -----.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생략)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u>처장</u> 이 된다.	② ----- <u>경찰청장이</u> -----.
③ 경호·안전 대책기구는 <u>소속공무원</u>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	③ ----- <u>대통령경호국 소속 공무원</u> -----

현행	민형배의원안
한다. ④ (생략) ⑤ <u>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u> 제6조(직원) ① <u>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u> ② <u>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조(임용권자) ① <u>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u> ② <u>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u> ③ 삭제 ④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u>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 행	민형배의원안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① <u>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u>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u> 1. <u>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u> 2. <u>「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③ <u>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u>	<삭 제>
제9조(비밀의 엄수) ① <u>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u>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삭 제>
제10조(직권면직) ① <u>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u> 1. <u>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u> 2. <u>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u>	<삭 제>

현행	민형배의원안
<u>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u> 3. <u>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 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u> 4. <u>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 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 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5. <u>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 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 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u> 6. <u>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 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u> ② 제1항제2호·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 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 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	민형배의원안
<u>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u>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u> <u>1. 연령정년</u> <u>가. 5급 이상: 58세</u> <u>나. 6급 이하: 55세</u> <u>2. 계급정년</u> <u>가. 2급: 4년</u> <u>나. 3급: 7년</u> <u>다. 4급: 12년</u> <u>라. 5급: 16년</u> <u>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u> <u>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u>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u> <u>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u> <u>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u>	<삭 제>

현행	민형배의원안
<u>연히 퇴직한다.</u> <u>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u> <u>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u> <u>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삭 제>
<u>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u>	<삭 제>
<u>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u> <u>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삭 제>

현행	민형배의원안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제16조(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u>경호처에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생략) ③ 위원장은 <u>처장이</u> 되고, 부위원장은 <u>차장이</u>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④·⑤ (생략)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u>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u>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경찰청장은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u> ----- ----- ----- -----. 제16조(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 ----- ----- ----- <u>대통령 소속으로</u>-----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경찰청장이</u>----- <u>대통령 경호국의 장</u>----- -----.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민형배의원안
<u>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u> <u>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u>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u> <u>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u> <u>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u> <u>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u>	<삭 제> <삭 제>

현행	민형배의원안
<u>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u>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손실보상) ① <u>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u> 1. <u>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u>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삭 제>

현행	민형배의원안
<u>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u> <u>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u> <u>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u> <u>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삭 제>
◦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경호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	

현행	신장식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경호의 직무범위</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경호”란 <u>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u>	1. ----- <u>경호 대상자(이하 “경호 대상”이라고 한다)</u> ----- ----- ----- -----.
2. “경호구역”이란 <u>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u>	2. ----- <u>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u>
3. “소속공무원”이란 <u>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u>	<삭 제>
4. “관계기관”이란 <u>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u>	4. ----- <u>경찰청이</u> ----- ----- ----- -----.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u>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3조(직무) ① <u>경찰청은 이 법에 따른 경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② <u>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u>	② <u>경찰청은 이 법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국을 둔다.</u>
③ <u>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u>	③ <u>경찰청이 법에 따른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u>

현행	신장식의원안
<u>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u> 제4조(경호대상) ① <u>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u> 1. ~ 5. (생략) 6. <u>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u>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u>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u>한정되어야 한다.</u> ③ <u>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u>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u>하여 관계기관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u> 제4조(경호대상) ① <u>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u>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경찰청장은</u>----- ----- ---. ② ----- ----- ----- <u>한정되어야 하며 경호 목적이 해소되는 즉시 해제해야 한다.</u> ③ <u>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u>----- ----- ----- ----- ----- -----.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현행	신장식의원안
안전관리) 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③ 경호·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생략) ⑤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직원)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호공무	안전관리) ① ----- ----- ----- ----- ----- 국무총리----- -----. <삭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현행	신장식의원안
<u>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u> <u>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u> <u>③ 삭제</u> <u>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u> <u>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u> <u>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u> <u>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u> <u>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u> <u>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u>	<u><삭 제></u> <u><삭 제></u>

현행	신장식의원안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	<삭 제>

현행	신장식의원안
<u>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u> ② <u>제1항제2호·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③ <u>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u> ④ <u>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u>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u> <u>1. 연령정년</u> <u>가. 5급 이상: 58세</u> <u>나. 6급 이하: 55세</u> <u>2. 계급정년</u> <u>가. 2급: 4년</u> <u>나. 3급: 7년</u> <u>다. 4급: 12년</u> <u>라. 5급: 16년</u> ② <u>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u>	<u><삭 제></u>

현행	신장식의원안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현행	신장식의원안
다. 제13조(보상) <u>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u>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u>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u>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u> ③ <u>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u>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u>	<삭 제> <삭 제>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경찰청장은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u> ----- ----- ----- -----. 제16조(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 ----- -----

현행	신장식의원안
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u>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정보의 교환 및 분석 3. (생략) ⑤ (생략) <u>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u> <u>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도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	----- ----- 국무총리 소속으로 <u>경호안전대책위원회</u>-----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 1. <u>대통령 등</u>----- ----- 2. <u>대통령 등</u>-----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신장식의원안
다. <u>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u>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u> <u>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서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u> <u>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u> <u>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정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u>	<삭 제> <삭 제>

현행	신장식의원안
<u>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u> 3. <u>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u>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손실보상) ① <u>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u> 1. <u>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u> 2. <u>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u>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삭 제>

현행	신장식의원안
<u>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u>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경호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	

현행	황명선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u>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u>직무범위와</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경호”란 경호 <u>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u>	1. ----- <u>대상자(이하 “경호대상”이라 한다)</u> ----- ----- ----- -----.
2. “경호구역”이란 <u>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u>	2. ----- <u>경호활동을</u> ----- ----- -----.
3. “소속공무원”이란 <u>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u>	<삭 제>
4. “관계기관”이란 <u>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u>	4. ----- <u>경호업무를</u> ----- ----- -----.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u>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3조(대통령경호국) ① 이 법에 따른 <u>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둔다.</u>
② <u>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u>	② <u>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u>
③ <u>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u>	

현행	황명선의원안
<u>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u> 제4조(경호대상) ① <u>경호처</u>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그 밖에 <u>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국내외 요인(要人)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u>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처장은</u>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u>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u>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생략) ② <u>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u> <u>처장이 된다.</u>	제4조(경호대상) ① <u>대통령경호국</u>----- -----. 1. ~ 5. (현행과 같음) 6. ----- <u>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u>----- -----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경찰청장은</u>----- ----- ---. ② (현행과 같음) ③ <u>경호업무를 수행하는</u>----- ----- ----- ----- ----- ----- -----.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황명선의원안
③ <u>경호·안전 대책기구</u>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생략) ⑤ <u>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u>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직원) ① <u>경호처에</u>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u>경호공무원</u>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② <u>처장</u>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삭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황명선의원안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비밀의 업무)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황명선의원안
<u>직할 수 있다.</u> 1. <u>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u> 2. <u>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u> 3. <u>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u> 4. <u>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5. <u>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u> 6. <u>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u> ② <u>제1항제2호·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③ <u>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u>	

현행	황명선의원안
<u>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u> <u>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u>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u> <u>1. 연령정년</u> <u>가. 5급 이상: 58세</u> <u>나. 6급 이하: 55세</u> <u>2. 계급정년</u> <u>가. 2급: 4년</u> <u>나. 3급: 7년</u> <u>다. 4급: 12년</u> <u>라. 5급: 16년</u> <u>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u> <u>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u>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u>	<u><삭 제></u>

현행	황명선의원안
2. <u>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u> ④ <u>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u> 제12조(징계) ① <u>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u> ② <u>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 <u>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u> ④ <u>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3조(보상) <u>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u>	<삭 제> <삭 제>

현행	황명선의원안
<u>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u>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u>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u>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u> ③ <u>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u>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생략) ③ <u>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u>	<삭 제>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경찰청장은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u> ----- ----- ----- -----.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 ----- ----- ----- <u>대통령 소속으로</u>-----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황명선의원안
④·⑤ (생략)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u>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u>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u>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u>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u>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u>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u>	④·⑤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현행	황명선의원안
<u>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u>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정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손실보상) ① <u>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u>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손실보상) ① <u>경찰청장은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u>

현행	황명선의원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u>처장</u>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u>처장</u>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u>처장</u>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생략) <u>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경찰청장</u>----- -----. ④ <u>경찰청장</u>----- ----- -----. ⑤ <u>경찰청장</u>----- ----- ----- ----- -----. ⑥ (현행과 같음) <u><삭제></u>
◦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경호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	

현행	이광희의원안
<u>한다.</u> ② <u>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u> ③ <u>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u> 제4조(경호대상) ① <u>경호처의 경호대상</u>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그 밖에 <u>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국내외 요인(要人) ②·③ (생략)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처장은</u>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u>한다.</u> ③ (생략)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대통령</u>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u>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u>	제4조(경호대상) ① <u>경호대상(이하 “대통령 등”이라 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6. ----- <u>경호가</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국가경호국은</u>----- -----. ② ----- ----- <u>하고, 경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 ----- ----- ----- ----- <u>국무총리</u>----- -----. <삭제>

현 행	이 광 회 의 원 안
③·④ (생 략) ⑤ <u>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u> <u>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u> <u>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u> <u>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u> <u>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u> <u>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u> <u>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u> <u>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u> 제6조(직원) ① <u>경호처에 특정직 국가</u> <u>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u> <u>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u> <u>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u> <u>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u> <u>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u> <u>으로 보할 수 있다.</u> ② <u>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중</u> <u>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조(임용권자) ① <u>5급 이상 경호공무</u> <u>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u> <u>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u> <u>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u> <u>파견·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u> <u>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u> ② <u>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u> <u>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u> <u>임용권을 가진다.</u> ③ <u>삭제</u> ④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u> <u>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u> <u>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을 준용</u>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이 광 회 의 원 안
<u>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u> 2. <u>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u> 3. <u>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u> 4. <u>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5. <u>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u> 6. <u>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u> ② <u>제1항제2호·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③ <u>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u>	

현 행	이 광 회 의 원 안
<u>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u> <u>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u>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u> <u>1. 연령정년</u> <u>가. 5급 이상: 58세</u> <u>나. 6급 이하: 55세</u> <u>2. 계급정년</u> <u>가. 2급: 4년</u> <u>나. 3급: 7년</u> <u>다. 4급: 12년</u> <u>라. 5급: 16년</u> <u>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u> <u>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u>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u>	<u><삭 제></u>

현행	이광희의원안
2. <u>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u> ④ <u>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u> 제12조(징계) ① <u>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u> ② <u>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 <u>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u> ④ <u>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3조(보상) <u>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u>	<삭 제> <삭 제>

현행	이광희의원안
<u>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u>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u>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u>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u> ③ <u>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u>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생략) ③ <u>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u>	<삭 제>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국가경호국장은-----</u> <u>-----</u> <u>-----</u> <u>-----</u> <u>-----</u> <u>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u>-----</u> <u>-----</u> <u>-----</u> <u>-----</u> <u>국무총리 산하에-----</u> <u>-----</u>.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이광희의원안
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 <u>경호에</u>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 <u>경호와</u> 관련된 첩보·정보의 교환 및 분석 3. (생략) ⑤ (생략) <u>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u> <u>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u> <u>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u>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u>	④ ----- -----. 1. -----<u>등 경호에</u>----- ----- 2. -----<u>등 경호와</u>-----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현행	이광희의원안
<u>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u> <u>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u> <u>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u> <u>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u> <u>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기나</u>	<u><삭 제></u>

현행	이광희의원안
<u>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u> <u>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u> <u>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u> <u>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u> <u>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u> <u>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u> <u>유가 있을 때</u>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손실보상) ① <u>처장은 소속공무</u> <u>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u> <u>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u> <u>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u> 1. <u>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u> <u>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u> <u>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u> <u>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u> <u>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u> <u>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u> <u>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u> <u>경우를 포함한다)</u> 2. <u>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u> <u>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u> <u>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u> <u>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u> ② <u>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u> <u>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u> <u>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u> <u>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u>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삭 제></u>

현행	이광희의원안
<u>성으로 소멸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u> <u>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u> <u>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삭 제></u>
◦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경호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	

현행	조인철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u>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직무범위와</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경호”란 <u>경호 대상자의</u>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1. ----- <u>경호대상의</u>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소속공무원”이란 <u>대통령경호처</u> (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u>경호처에</u>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3. ----- <u>대통령경호국</u> ----- ----- <u>대통령경호국에</u> -----.
4. “관계기관”이란 <u>경호처가</u>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4. ----- <u>대통령경호국이</u> ----- ----- ----- -----.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u>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3조(대통령경호국) ① <u>이 법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이하 “경호국”이라 한다)을 둔다.</u>
② <u>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u>	② <u>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u>
③ <u>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u>	
제4조(경호대상) ① <u>경호처의</u> 경호대상	제4조(경호대상) ① <u>경호국의</u> -----

현행	조인철의원안
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그 밖에 <u>처장이</u>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u>처장이</u>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처장은</u>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생략)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u>처장</u>이 된다. ③ . ④ (생략) ⑤ <u>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u> 제6조(직원) ① <u>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u>	-----. 1. ~ 5. (현행과 같음) 6. ----- <u>경찰청장이</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경찰청장이</u>----- -----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경찰청장은</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u>경찰청장이</u>-----.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현 행	조인철의원안
<u>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u> <u>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u> <u>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u> <u>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u> <u>으로 보할 수 있다.</u> <u>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u> <u>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호공무</u> <u>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u> <u>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u> <u>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u> <u>파견·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u> <u>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u> <u>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u> <u>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u> <u>임용권을 가진다.</u> <u>③ 삭제</u> <u>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u> <u>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u> <u>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을 준용</u> <u>한다.</u> <u>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u> <u>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u> <u>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u> <u>에서 임용한다.</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u> <u>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u> <u>사람</u> <u>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u>	<삭 제> <삭 제>

현행	조인철의원안
<u>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u>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생략) <u>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제1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 <u>(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u> <u>1. 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u> <u>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u> <u>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u> <u>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u>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u>	제9조(비밀의 엄수)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현행	조인철의원안
<u>어렵다고 인정될 때</u> 6. <u>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u> ② <u>제1항제2호·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③ <u>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u> ④ <u>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u>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u> 1. <u>연령정년</u> 가. <u>5급 이상: 58세</u> 나. <u>6급 이하: 55세</u> 2. <u>계급정년</u> 가. <u>2급: 4년</u> 나. <u>3급: 7년</u> 다. <u>4급: 12년</u> 라. <u>5급: 16년</u> ② <u>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u>	<u><삭 제></u>

현행	조인철의원안
<u>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u> <u>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u>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u> <u>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u> <u>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u> <u>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u> <u>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u>	<u><삭 제></u>

현행	조인철의원안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	<삭 제> <삭 제>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경찰청장은</u>----- ----- ----- -----.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

현행	조인철의원안
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u>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위원회는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u>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u>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u>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u>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u>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u>대통령 경호와</u> 관련된 첩보·정보의 교환 및 분석 3. (생략) ⑤ (생략) <u>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	----- ----- ----- <u>대통령</u> <u>소속으로</u>----- ----- <u>둘 수 있다.</u> ② ----- <u>위원장</u>----- ----- <u>15명</u>----- -----. ③ ----- <u>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u> ----- ----- -----. ④ ----- -----. 1. <u>경호에</u>----- ----- 2. <u>경호와</u>-----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 행	조인철의원안
<u>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u> <u>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u>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u> <u>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u> <u>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u> <u>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u>	<u><삭 제></u> <u><삭 제></u>

현행	조인철의원안
<u>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u> 3. <u>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u>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손실보상) ① <u>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u> 1. <u>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u> 2. <u>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u>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삭 제></u>

현행	조인철의원안
<u>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u>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을----- ----- ----- -----. <삭 제>
◦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경호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	

2. 해외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 관련 제도

1) 미국

-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경찰과 분리된 경호조직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그 수장 또한 차관보급으로 한국보다 낮음
- 미국의 현직 및 전직 대통령 경호는 비밀경호국(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USSS)³⁾에 의해 이루어짐
 - 1963년 한국에 창설된 대통령경호실(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의 모델이기도 함
 - 미국 비밀경호국은 1865년 미국 최초 연방수사기관으로 재무성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01년에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에 미 의회에서 비밀경호국이 미국 대통령의 보호를 담당하도록 법률로 정함
 - 2001년 9·11 테러 이후 신설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로 소속이 변경되었음
- 비밀경호국(SS)에 위임된 직무에 관해서는 「18 U.S. Code § 3056」에서 규정하고 있음
 - 비밀경호국은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부통령 당선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The immediate families, 배우자 포함),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이혼 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제외), 전직 대통령의 16세 미만 자녀, 미국을 방문 중인 외국 정부 수반 내외 등을 보호하고, 이러한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협요인을 수사함
 - 비밀경호국은 또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부통령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경호함
- 현재 비밀경호국은 기존 경호기능에 항공안전부, 대저격팀, 긴급대응팀, 대추적부대, 위협요인완화팀, 의료긴급대응팀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 비밀경호국의 인원은 약 3,200명의 특수요원, 1,300여명의 정복경호원, 2,000여명의 행정·전문·기술요원 등으로 구성됨⁴⁾

3) 미국 대통령 비밀경호실 홈페이지, (최종검색일: 2025년 2월 3일) <<http://www.secretservice.gov/protection>>.

4) 안승욱, “한·미 대통령경호 제도변화 비교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47)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 경호 관련 입법조사」, 입법조사회답, 2025. 2. 12.

2) 영국⁵⁾

- 영국은 경찰중심의 경호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영국의 현직 및 전직 총리는 런던 수도경찰청(London's Metropolitan Police Service)의 특수작전국(Specialist Operations) 소속으로 경호보안본부(Security & Protection) 산하 경호경비부(The Protection Command)의 보호를 받음
- 경호경비부는 현재 2개의 경호과로 운영되고 있음
 - 왕실·요인경호과(RaSP: Royalty and Specialist Protection)
 - 하원청사·외교공관경비과(PaDP: Parliamentary and Diplomatic Protection)
- 현직 및 전직 총리의 경호는 왕실·요인경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2018년에는 대테러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특수작전국 산하에 대테러부대를 하위에 편제하고 대테러정책관을 신설함
- 현직 총리의 경우,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 뿐만 아니라 특수부대(UK Special Forces)에 의해 근접경호를 받게 됨

3) 독일

- 독일의 현직 대통령 및 총리 등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업무는 연방 내무부 산하 연방 범죄수사청(BKA : BundesKriminalamt, 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 그 중에서도 경호총국(Sicherungsgruppe, SG)에서 담당하고 있음
- 연방범죄수사청은 독일 「연방헌법」 제87조에 의거, 각 주의 경찰업무를 감독하여 연방정부 중앙경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
 - 경호총국은 「연방형사경찰법」 제6조에 따라 연방 대통령, 연방 수상 등 헌법기관의 보안 및 보호를 담당함⁶⁾
- 경호총국의 임무는 경호1처(SG-E그룹)와 경호2처(SG-F그룹)으로 나뉘는데, 경호1

5) 정임수, 임준태, “최근 G7국가의 경호시스템 현황 분석”, 『시큐리티연구』 제73호, 2022, pp.267-278.

6) 독일 연방범죄수사청, “Abteilung “Sicherungsgruppe” (SG)”, (최종검색일: 2025년 2월 3일) <https://www.bka.de/DE/DasBKA/OrganisationAufbau/Fachabteilungen/Sicherungsgruppe/sicherungsgruppe_node.html>.

처는 연방대통령, 연방총리 및 기타 내각구성원과 국내 주요요인에 대한 보호 및 각종 주요시설의 경호경비 등을 제공하며, 경호2처는 전술작전센터운영, 국내 방한 요인경호, 작전 및 IT지원,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함⁷⁾

- SG-E1(연방대통령과)에서 현 연방대통령과 전임 연방대통령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하여, SG-E2(연방총리과)에서 현 연방총리와 현 내무부장관, 전임 연방총리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함
- 최근에는 특수임무수행과(SG-E5)와 특별행사과(SG-E6)가 증설됨

□ 경호업무 이외에 수사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주로 수행함

□ 연방범죄수사청 인원은 약 4,500명이나 실제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안전과 인원은 5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총리·외무장관·국방장관·내무장관·법무장관은 항상 수행경호를 실시하고, 기타요인은 위해정보 발생 시에만 한시적으로 경호함

□ 전직 대통령 및 총리의 경우, 기타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됨. 또한 중요한 업무에 관해서는 연방헌법보호청(BFV, 정보기관에 해당)의 보호를 받기도 함⁸⁾

4) 일본⁹⁾

□ 일본의 경호시스템은 3원화 구조로, 중앙경호조직인 경찰청, 도쿄의 경시청(도쿄도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 조직, 한국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영국의 런던수도경찰청에 해당함), 지방경호조직인 각 도부현(道府県)의 경찰본부가 협력하여 이루어짐

□ 일본의 현직 총리의 경호는 일본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요인 경호 임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SP(Security Police)라고 지칭함

- 경호1계 : 현직 내각총리대신(수상) 담당
- 경호2계 : 국무대신 담당
- 경호3계 : 외국요인 등 국빈·기동경호(機動警護) 담당
- 경호4계 : 도쿄도지사·정당요인 담당
- 총리대신관저경비대의 경우, 총리대신관저의 시설경비를 수행하는 부대로 근접경호는

7) 독일 연방범죄수사청, "Organigramm als barrierefreier Text", (최종검색일: 2025년 2월 3일) <http://www.bka.de/SharedDocs/Downloads/DE/DasBKA/Organisation_Aufbau/organigramm_barrierefrei.pdf?__blob=publicationFile&v=3>.

8) 정임수, 임준태, 앞의 글, p.272.

9) 정임수, 임준태, 앞의 글, p.276.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SP가 아님

- 한편, 전직 총리의 경우, 정당요인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 SP가 경호를 담당하게 됨
- 지방경호조직인 각 도부현의 경찰본부에서는 경비부가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계획과 실행업무를 수행함
 - 경비부는 공안과, 외사과, 경비과, 기동대로 구성되며, 이들 중 경비과가 경호계획과 수행경호업무를 수행하며, 공안과와 외사과가 국내외 정보·첩보분석업무를 지원하며, 기동대가 예비대 역할을 함
- 일본에서는 경찰법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호요칙(警護要則)」¹⁰⁾에 경호에 관한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호의 적절하고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경호요칙」에 따르면, “경호대상자”란 내각총리대신, 국민 기타 그 신변에 위해가 미치는 것이 국가공안에 관한 것이 될 우려가 있는 자로 경찰청장(이하 “장관”이라 함)이 정하는 자를 말함(제2조)
 - 경찰본부장 등은 경호의 실시에 있어서 미리 경호와 관련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경호를 실시해야 함(제10조)
 - 또한, 경찰본부장 등은 경호를 실시한 때에는 당해 경호 상황 및 해당 경호에 관련된 참고 사항을 장관(경찰청장) 등에 보고하도록 함(제18조)
- 일본 경호조직의 인원현황을 보면 근접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의 경우 300여명이며, 천황 및 그 일가의 근접경호와 항공경비를 맡는 항공경찰본부가 900여명임
 - 지방경호조직인 도부현 경찰본부의 근접경호인력, 경호계획을 담당하는 경찰청 경비국 경비운용부, 경시청의 정보·보안·대테러 등 경호지원부서, 총리관저경비대까지 포함한다면 인원은 크게 늘어날 수 있음

10) 경호요칙(警護要則), (최종검색일: 2025년 2월 4일) <https://laws.e-gov.go.jp/law/504M60400000015#Mp-Ch_6>.